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|
| 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Cp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7. Cp-E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8. Cp2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<u>9. Cp2-F클래스 수익증권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 |
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C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7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8. Cp2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|

| | |
|---|---|
| <p><신 설> ②~⑤(생 략)</p> | <p><u>9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u> ②~⑤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 략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-----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(생 략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<u>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</u>)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<u>국가가 발행한 채권</u>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</u> 투자신탁</p> | 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-----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<u>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</u>)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<u>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/u>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</u>),</p> |

| | |
|--|--|
| <p>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-----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<u>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</u>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</p> <p>3.~6.(생략)</p> <p>7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8.~10.(생략)</p> | <p><u>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</u>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-----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<u>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</u>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</p> <p>3.~6.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</u>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8.~10.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~③(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u> 다만, 법제</p> | 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</u></p> |

| | |
|---|---|
| <p><신 설></p> |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6.2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9. Cp2-F클래스 수익증권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7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5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|
| <p>제42조(환매수수료) ①·② (생 략)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<u>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</u>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| <p>제42조(환매수수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<u>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</u>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~4.(생 략)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6.~10.(생 략) ②~⑤(생 략)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</p> | 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~4.(현행과 같음)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,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</u>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6.~10.(현행과 같음) ②~⑤(현행과 같음)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</p> |

| | |
|---|--|
| <p>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(생략)</p> | <p>한다. 다만, <u>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</u>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(<u>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조 제2항 제1호</u>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 | 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 |
| <p><신설></p> | <p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</p> |